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로자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73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 고 사 항	2
IV . 검 토 의 견	3
1. 근로자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안 제11조제1항제3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 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근로자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안 제11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 경영공시사항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 - (그 외 생략)	○ 경영공시사항 - 임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 <u>운영인력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u> 근로자 성비 및 <u>운영인력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u>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공공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할 경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영과 관련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으로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각각의 임금과 남성·여성 및 전체 상임임원의 평균임금을, 직원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단시간 무기계약직별로 구분하여 남성·여성별 평균임금을 각각 공시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기반하여 매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여 발표²⁾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22.7%로 전년(25.2%) 대비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9.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임금격차
	남성 1인당 평균임금	여성 1인당 평균임금	
2019	7,662	5,474	28.6
2020	7,763	5,606	27.8
2021	7,806	5,755	26.3
2022	7,887	5,896	25.2
2023	7,849	6,074	22.7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70.9%, 여성 정규직의 경우 남성 정규직 임금의 73.3%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5,156		27,703		18,404	(66.4)
남성	28,734	[100.0]	30,932	[100.0]	21,270	[100.0] (68.8)
여성	20,363	[70.9]	22,670	[73.3]	15,807	[74.3] (69.7)

주: []는 남성대비 수준,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과 같이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의 성별 임금을 단순 평균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직종별·직급별·근속연수·고용형태

별 성별 임금 격차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현황을 제공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채용과 임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각종 분류별 성비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대내외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상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경영공시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의 공개는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³⁾에 따라 성별 평균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형태별 성비나 성별 평균 근속년수를 이미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갖는 공익적 특성상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상장법인의 공시와 유사하게 근로형태별로 성비 등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겠음.

3)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공시) ①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u>	3. <u>임원 및 운영인력(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현황에 대한 다</u>

현 행	개 정 안
	<u>음 각 목의 사항</u> <u>가. 임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u> <u>나. 운영인력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운영인력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u> <u>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u> <u>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u>
4. ~ 16. (생략)	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